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

2) 입법예고(2020.6.19. ~ 7.31),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6개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6월” 을 “1개월” 로 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기 령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10년 이하	1년
		1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년 이하	1년
		1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0년 이하	1년
		1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향타 및 향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0년 이하	1년
		1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10년 이하	1년
		1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비 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기령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보유기준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대지 및 건물	대지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건물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차량	
전산시설	전산기기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통신망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프로그램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cm ² 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cm ² 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계이지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
	축중계(軸重計: 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계이지	
	온도측정기	300℃ 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고:

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p>1) 책임검사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소지자</p> <p>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p>	1명 이상
<p>2) 검사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p> <p>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 전공자로서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2명 이상
<p>비고:</p> <p>법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정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p>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p>1) 책임검사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p> <p>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1명 이상</p>
<p>2) 검사원</p> <p>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p>	<p>1명 이상</p> <p>1명 이상</p> <p>1명 이상</p>

별표 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등(제93조관련)

종 목	금 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1대에 대하여 4,000원
2. <삭제>	
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 부) 또는 초본(갑부)의 교부신청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6.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1) 최초등록	1대에 대하여 165,000원
(2) 재등록	1대에 대하여 57,800원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시 57,800원)

(2) <삭제>	
(3) 수시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
(2)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3)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314,600원
(4)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삭제>	
8.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가. 형식승인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
나. 형식변경승인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
다. 형식신고	1형식에 대하여 462,000원
라. 형식변경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9.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415,800원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293,700원
9의2.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1대에 대하여 8,36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4,510,000원)
9의3. 건설기계 부품인증 또는 부품인증 변경 신청	1부품에 대하여 495,000원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사업체에 대하여 30,000원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1사업체에 대하여 5,000원
1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재개 신고	1사업체에 대하여 500원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1면허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2,500원
1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1재교부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2,500원
14의2.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15.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사업자 등록증재교부신청	1매에 대하여 500원
16.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비고 : 1. 제6호부터 제9의3호에 따른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검사받으려는 일자	검사에정지		
유효기간 ~		
구조변경내용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등록: 165,000원 · 재등록: 57,8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 82,500원(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57,800원) · 수시검사: 82,5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82,500원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용량 20톤 미만: 176,000원 · 정격용량 20톤 이상 200톤 미만: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 정격용량 200톤: 314,600원 · 정격용량 200톤 초과: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210mm×297mm [백상지(80g/㎡)]

첨부서류

1. 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관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al)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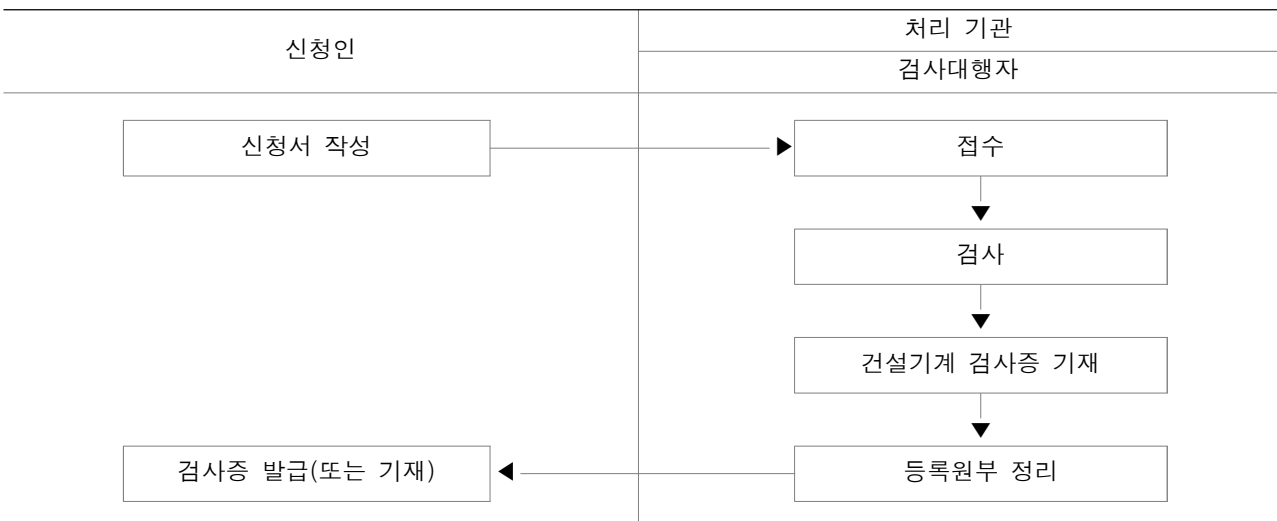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 []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인(변경승인): 15일 신고(변경신고):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 7일
------	------	------	--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	규격
-------	----

건설기계형식

원동기형식

제작사명(제작국)

(전화번호:)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귀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형식승인: 572,000원 형식변경승인: 286,000원 형식신고: 462,000원 형식변경신고: 231,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 231,000원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선적서류 사본
-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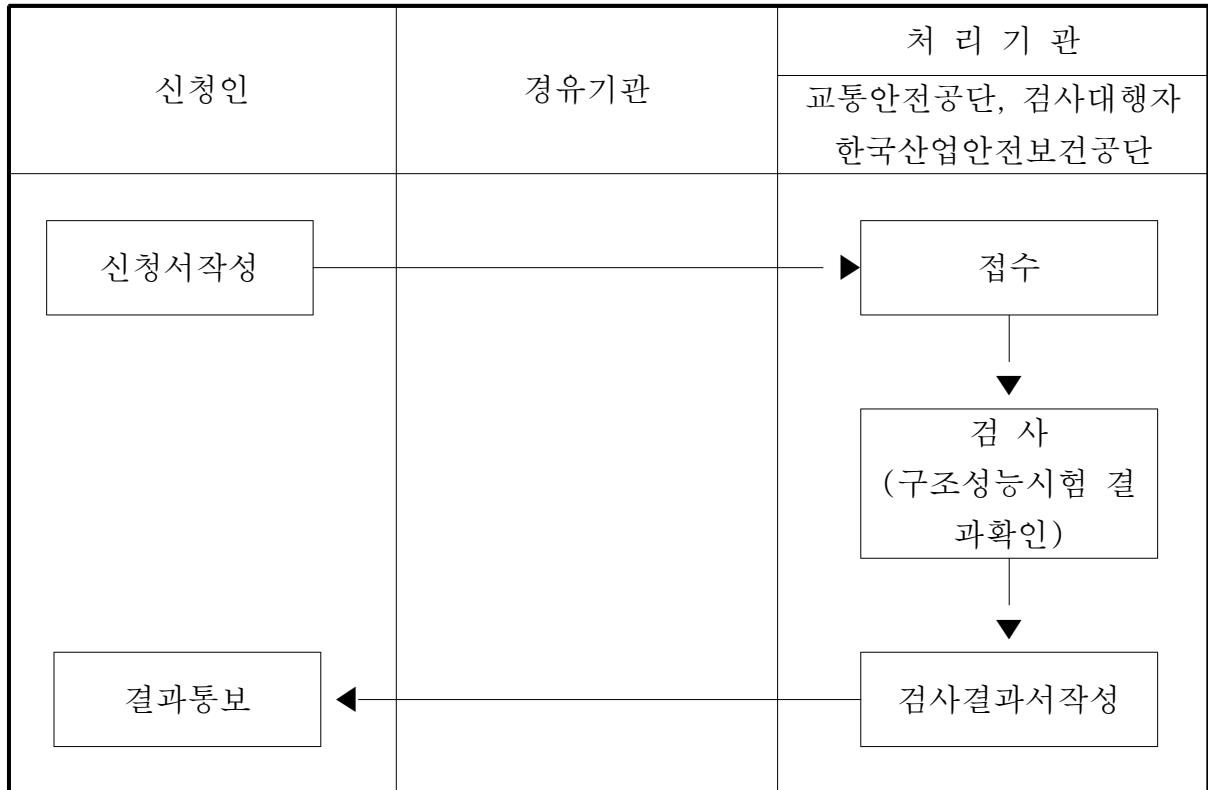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u>6개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u>6개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④ (생략)</p>	<p>제31조(정비명령등) ①----- ----- -----<u>1개월</u>----- ----- ----- ----- ----- -----</p> <p>②----- ----- ----- ----- ----- ----- ----- ----- -----<u>1개월</u>----- ----- -----</p> <p>③~ ④ (현행과 같음)</p>